

상표권 양도 계약서

김도현의 피상속인 최수정(이하 “양도인” 이라 한다)과 (주)한국해양기술(이하 “양수인” 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상표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양도상표권)

본 계약으로 양도되는 권리는 아래의 상표권(이하 “양도상표권”)이다.

- 1) 상품분류 제36류 무역대리업등 5건
출원번호(일자) 41-2011-0023647 (2011. 08. 09)
출원인 김도현
등록번호(일자) 제41-0243873호 (2012. 11. 05)
- 2) 상품분류 제37류 해저 전선 케이블 수리업등 2건
출원번호(일자) 41-2011-0023648 (2011. 08. 09)
출원인 김도현
등록번호(일자) 제41-0253509호 (2013. 03. 06)
- 3) 상품분류 제41류 레저시설제공업등 18건
출원번호(일자) 41-2011-0023650 (2011. 08. 09)
출원인 김도현
등록번호(일자) 제41-0253510호 (2013. 03. 06)

제3조 (양도인의 의무)

1. 양도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양수인에게 전조의 양도상표권을 이전한다.
2. 양도인은 양도상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를 양수인명의로 상표 등록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3. 전조의 상표는 제1항 기재의 날로부터 양수인이 사용하고 그 이후 양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양도인은 이 계약 성립일 이후 위 양도상표권을 양수인이외의 어떠한 타인에게도 대여·양도·사용 승낙할 수 없고 스스로 변경·말소·소멸에 관한 출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 (양수인의 의무)

1.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전조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 삼백만원 (₩3,000,000)의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.
2. 양수인은 본 계약의 범위를 넘어 양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계약내용의 변경·추가)

1.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며,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.


제6조 (비용의 부담)



본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.

제7조 (기타)

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11월 28일

양도인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4길 31, 101동 1102호
(도곡동, 도곡현대하이페리온아파트)
주민등록번호 : 520830-2037319
성 명 : 최 수 정  (인)

양수인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17-5
법인등록번호 : 110111-0912801
상 호 : (주)한국해양기술 
대표자 : 김 영 재  (인)